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

2023. 5.



전라남도
JeollaNamdo
(감 사 관 실)

I.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인사 운영 등을 종합적·체계적 감사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23. 2. 6.부터 2. 10.까지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II. 감사결과

대상 기관	총계 (가:다)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모범 사례 (다)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E)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기관 경고 (E)	
						계 (A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재정상 처분의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인재 평생교육 진흥원	14	2 (7)		2 (7)	11	2 (1)	1 (1)	1 (1)				1	7		2		1

Ⅲ. 주요 처분요구

① 기금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진흥원(사무처)은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 「진흥원 기금관리 규정」 제4조 등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및 그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원장은 매년 기금 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진흥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그리고 같은 규정 제6조의2에 원장은 전년도 기금운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년부터 '21년까지 1,069억원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미 실시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도 미 실시하여 업무 소홀
 - 또한 '20년부터 '22년까지 1,605억원의 전년도 기금운용 결과보고서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 관리 업무 부적정 처리

☞ 앞으로 기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② 임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 진흥원(사무처)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직원 9명을 신규로 채용함

1. 면접시험의 평가기준 미공개

- 「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Ⅲ. 직원의 인사에 기관장은 채용시험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을 공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채용공고문에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공고

2. 채용 방법 자의적 설정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Ⅲ. 직원의 인사 ① 신규채용에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진흥원 인사규정」 제11조에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과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종합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은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필기시험 합격 점수기준을 개별 과목 40점 또는 60점 이상으로 규정에 다르게 결정
- 또한 면접시험은 규정에 없는 불합격 점수 기준을 60점 또는 70점 미만으로 임의 적용하여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공고일	시험방법	필기시험 합격기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
2020. 08. 12.	필기→서류→면접	개별 과목 40점 이상	평점 불합격 기준 없음
2021. 07. 09.	서류→면접	-	평점 70점 미만 불합격
2021. 08. 26.	필기→서류→직무시험(40%)+면접(60%)	개별 과목 60점 이상	평점 불합격 기준 없음
2022. 01. 10.	서류→면접	-	평점 60점 미만 불합격
2022. 08. 05.	서류→필기→면접	-	평점 60점 미만 불합격

☞ 앞으로 직원 신규 채용 시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과 방법을 적용하도록 “주의요구”

③ 임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 진흥원(전남학숙)은 「진흥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아 직원에게 공가 등을 실시하고, 「진흥원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업무를 처리

1. 건강검진 공가 허가 부적정

- 「진흥원 복무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원장은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
- 또한 「진흥원 인사규정」 제49조 제1항 [별표 3] 징계기준에 무단결근 등 직장(근무)을 이탈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전남학숙)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 등 5명이 7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를 허가받고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도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 소홀
- 그 결과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 등 5명에게 연차휴가수당 100만원이 과다 지급되는 예산 낭비 초래

2. 소속 임직원 음주운전 여부 미확인

- 「진흥원 인사 규정」 제22조에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승진을 제한하고, 같은 규정 제50조 [별표 6]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 또한 「진흥원 보수 규정」 제14조 등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가산하여 승급을 제한하고,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 한편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임직원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통한 음주운전 여부를 미확인

- 특히 감사관이 감사기간 동안 임직원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13. 00. 00. 음주운전 적발사항을 확인하였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 못하여 징계 미처리
- 그로 인하여 음주 비위자의 징계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징계 규정 운영의 유명무실화 초래

- ☞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를 허가받은 후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관련자 5명에게 **"훈계요구"**
- ☞ 공가를 부당하게 사용한 5명에게 부적정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1백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4 기타보상금 집행 및 상품권 관리 부적정

- 진흥원(전남학숙)은 '20년부터 '22년까지 전남학숙 기타보상금 예산과목으로 1억 7,390만원을 편성하고 1억 1,919만원을 집행

1. 기타보상금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 「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하도록 규정
 - *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 또한 「전남학숙 학생수칙」 제20조 등에 도서대출, 입·퇴사 안내 등 학생편의 업무를 하는 근로도우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 그리고 같은 수칙 「전남학숙 학생수칙」 제25조 등에 공용시설 점검결과, 학숙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여 자율회임원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 학숙 내 봉사활동, 헌혈, 선행 등 행위가 뛰어난 경우에 시상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진흥원(전남학숙)은 '20년부터 '22년까지 학생편의 근로분야를 미지정한 채 임의 심사하여 8,539만원을 부적정 집행
 - 또한 자율회임원 활동보상금을 '22년 상반기에는 상대평가, 하반기에는 절대평가하는 등 평가기준 등을 임의 적용하여 915만원을 부적정 지급
 - 그리고 재사생에게 시상품을 지급하면서 실무자가 행사를 임의로 선정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552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 코로나19격려 또는 ○○생활 인증샷 이벤트 상품권 384만원, ○○○경기응원 시상품 95만원, 프로○○ 관람 입장료와 간식비 73만원

- 그로 인하여 전남학숙 기타보상금 1억원이 부적정 집행되는 결과 초래

2. 상품권 관리 부적정

- 국민권익위원회 「상품권 관리 지침」 제3조에 상품권 구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구매 수량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등 시기별로 통합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같은 규정에 상품권을 구입·사용 시에는 용도, 수량, 지급일, 사용처 등을 반드시 기재한 구입 및 사용대장을 관리하고, 상품권 수령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전남학숙)은 '20년부터 '22년까지 762만원의 상품권을 구입 하면서 통합구매 등 예산 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품권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상품권 수령 여부 등을 알 수 없게 방치
-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는데도 '21. 11. 3. 직원 2명(○○○, ○○○)에게 각 1만원권 상품권을, '21. 12. 27. 직원 1명(○○○)에게 1만원권 상품권 등 총 3만원 상품권 부적정 지급

-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도우미 활동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담당○○에게 **“훈계요구”**
- ☞ 상품권 구입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품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 ☞ 상품권을 시기별로 통합구매하여 예산을 절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5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 위 진흥원(사무처)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 「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행사운영비**는 초청장, 홍보유인물 등 행사 개최 소요 경비만 집행하고 행사참여자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은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새○○ 으뜸○○○○ 행사' 등을 추진하면서 **26건 152만원**을 다과비로 집행하고, **105만원**의 행사 기념품을 구입하여 부적정하게 집행
- 또한 같은 지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매식비 단가 8천원 이내에서 급량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년부터 '22년까지 '대한민국○○○○박람회' 등 6건 행사에서 매식비 단가 8천원보다 적게는 31원, 많게는 6,464원을 초과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적정하게 집행

☞ 앞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요구”**

⑥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사무처)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22년 ○○○ ○○ ○○박람회 총괄대행 용역 등 90건을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

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1인 건적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기업과 체결하는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 7월부터 '22. 12월까지 소기업과 3건*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1인 건적으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

* 2022년 ○○○ ○○○○박람회 총괄대행 용역(45백만원), 2022년 제3회 ○○○○ ○○ 세미나 개최 대행 용역(30백만원), 전남 ○○ ○○학교 교재 제작(32백만원)

2. 단일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등에 사업의 예산편성과 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분할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단일사업으로 확정된 '22년 ○○○○ 멘토링 ○○'에 대하여 행사대행, 강사파견으로 분할하여 발주하여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 분할발주 1인 건적 수의계약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편성명	용역명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업체
2022년 ○○○○ 멘토링 ○○	계		51,990	50,790	
	행사 대행	'22.00.00.	39,990	39,990	전라남도 ○○○○○○
	강사 파견	'22.00.00.	12,000	10,800	○○○○개발원

- 그로 인하여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낙찰하한율(88%)보다 높은 낙찰률로 계약함으로써 최대 503만원* 예산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 503만원 = 5,079만원(계약금액)-[5,199(예정가격)×88%(견적공고 시 용역 낙찰하한율)]

3.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과다체결 등 업무처리 부적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16. 8.)」에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속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과다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권고
-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 가격을 비교 검토 후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6건 이상 중복 계약하는 등 5개 업체에 총 34건을 편중해서 수의계약을 체결
 - 또한 '20년 전라남도 ○○○○○○조사 용역' 등 24건(3억 741만원)을 견적가격 비교 검토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인 견적금액 그대로 (낙찰율 100%) 수의계약을 체결
- 그로 인하여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었고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3,689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 앞으로 소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단일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단일계약으로 체결하며, 「지방계약법」과 권익위 권고 등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7 계약기간 연장 건에 대한 채권확보 부적정

1. 선금 채권 보증기간 연장 소홀

- 위 진흥원(사무처)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발주한 계약 건에 대하여 총 4건, 1억 1,370만원의 선금을 지급
- 「계약 집행기준」에 선금을 지급할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기간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고,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정에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진흥원 ○○○○○ 구축 용역' 등 4건에 대하여 선금 지급 후 기간 연장된 보증서를 받지 않은 채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종료하는 등 채권 확보업무 소홀

2. 계약이행보증서 갱신 소홀

- 위 진흥원(사무처)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총 15건, 계약금액 5억 7,055만원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 등을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
- 「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규정
-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년 전라남도 ○○○○ ○○조사 용역' 등 15건*의 기간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기간연장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변경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

* 15건 중 사업종료 14건, 사업 진행 중 1건('22년 ○○를 ○○하는 ○○마당 행사대행)

☞ 진행 중인 사업은 기간연장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도록 **“시정요구”**
☞ 선금 및 계약이행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8 하자검사 완료확인서 발급 업무 소홀

- 위 진흥원(전남학숙)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전남학숙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중
-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에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전 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를 하고,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전남학숙)은 '도립전남학숙 ○○○ 리모델링 공사' 등 3건을 최종 검사일부터 적게는 25일부터 많게는 86일이 지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확인서를 발급하여 업무처리 소홀
 - 또한 '전남학숙 ○○○○○○환경개선공사(타일, 창호)' 등 2건에 대하여 최종검사 한 후 '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미발급하는 등 부적정 처리

연번	사업명	하자담보책임기간	최종검사일	하자보수완료 확인서 발급여부	확인서 지연 발급일
계	5건				
1	도립전남학숙 ○○○ 리모델링(도배,장판) 공사	'20.08.13.~'21.08.12.	'21.11.05.	여	86일
2	전남학숙 ○○○○○ ○○○○ 설치공사	'19.09.06.~'22.09.05.	'22.11.29.	여	85일
3	전남학숙 ○○○○○○ 설치공사(여자층)	'18.10.12.~'21.10.11.	'21.11.05.	여	25일
4	전남학숙 ○○○○○○ 환경개선공사(타일, 창호)	'21.10.15.~'22.10.14.	'22.10.05.	부	
5	전남학숙 ○○○○○○ 환경개선공사(기타부분)	'21.10.15.~'22.10.14.	'22.10.05.	부	

☞ 앞으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IV. 모범 사례

1 |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생에게 2년 연속(2020~2021)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 장학금 지급

□ 추진배경

- 장학금명 :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 사업시기 : 2020. ~ 2021.
- 총사업비 : 72억원(도 출연금 35억원, 기부금 등 37억원)
-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
- 지원목적 : 취업준비 및 생활안정 장학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21개 대학 졸업학년도 재학생
 - 보호자(부 또는 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1년 이상 도내 소재한 경우
- 신청절차 : 공고 및 접수(진흥원 누리집) ⇒자격심사(진흥원/대학) ⇒장학금 지급

□ 추진실적

구분	계	2020년	2021년	비고
지원인원	12,079명	6,476명	5,603명	
장학금액	7,247백만원	3,885백만원	3,362백만원	

□ 향후계획

- 전남 대표 장학재단으로서 수혜자 맞춤형 장학사업 발굴 지속 노력

V. 처분요구서

목 차

① 기금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15
② 임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17
③ 임직원 복무관리 업무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통보)	20
④ 기타보상금 예산집행 및 상품권 관리 부적정(훈계, 개선, 통보)	25
⑤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주의)	31
⑥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35
⑦ 계약기간 연장 건에 대한 채권확보 부적정(시정, 주의)	37
⑧ 하자검사 완료확인서 발급 업무 소홀(주의)	41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금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금관리 규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장은 매년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진흥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6조의2에 따르면 원장은 전년도 기금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매년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년도 기금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매년 기금운영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069억원의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어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전년도 기금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605억원의 전년도 기금운영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전년도 기금운영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기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요요구

제 목 임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 1]과 같이 5차례에 걸쳐 9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표 1] 직원 신규채용 현황

(단위 : 명)

연번	구분	채용형태	공고일	직종	직급	최종선발인원
계	5회					9
1	정규직	공개	2020.08.12.	사무직	9급	3
2	비정규직	공개	2021.07.09.	사무보조	기간제	1
				운전직(전남학숙)	기간제	1
3	정규직	공개	2021.08.26.	사무직	6급	1
4	비정규직	공개	2022.01.10.	사무보조	기간제	1
5	정규직	공개	2022.08.05.	운전직(전남학숙)	무기계약	2

자료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면접시험의 평가기준 미공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Ⅲ. 직원의 인사에 따르면 기관장은 공개경쟁시험 등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고,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는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이하 “진흥원 인사 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채용공고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진흥원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채용공고에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는 평가기준을 진흥원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차례 걸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에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공고하여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 채용 방법 자의적 설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Ⅲ. 직원의 인사 ① 신규채용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인사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채용시험은 필기시험·서류전형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과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종합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채용시험을 실시할 시에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과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종합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 능력만을 검정하여 합격자를 결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차례 채용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개별 과목 40점 이상과 과목평균 60점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표 2]와 같이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개별과목 40점 이상 또는 개별과목 60점 이상으로 결정하여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면접시험의 경우에도 규정에 없는 불합격 기준을 평점 60점 미만 또는 70점 미만으로 임의적으로 적용하여 채용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표 2] 채용시험 부적정 실시 현황

공고일	시험방법	필기시험 합격기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
2020. 08. 12.	필기→서류→면접	개별 과목 40점 이상	평점 불합격 기준 없음
2021. 07. 09.	서류→면접	-	평점 70점 미만 불합격
2021. 08. 26.	서류→필기→직무시험(40%)+면접(60%)	개별 과목 60점 이상	평점 불합격 기준 없음
2022. 01. 10.	서류→면접	-	평점 60점 미만 불합격
2022. 08. 05.	서류→필기→면접	-	평점 60점 미만 불합격

자료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직원 신규 채용할 때에는 시험항목 및 배점비율, 서류전형·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통보

제 목 임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학숙)

훈 계 대 상 자 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학숙) ○○(0급) ○○○
②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학숙) ○○(0급) ○○○
③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학숙) ○○(0급) ○○○
④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학숙) ○○(0급) ○○○
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학숙) ○○(0급) ○○○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복무 규정」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속 직원들에게 공가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장(0급) ○○○는 2019. 1. 1.부터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전남학숙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장(0급) ○○○은 2011. 1. 1.부터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전남학숙 ○○○○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장(0급) ○○○은 1999. 3. 2.부터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전남학숙 ○○○○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0급) ○○○는 2018. 7. 1.부터 2021. 6. 30.까지 전남학숙 ○○○○팀에서 근무하였고, ○○(0급) ○○○은 2021. 1. 1.부터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전남학숙 ○○○○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2. 건강검진 공가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복무 규정」(이하 “진흥원 복무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원장은 직원이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복무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상황은 원장이 확인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직원이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근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이하 “진흥원 인사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별표 3 징계기준에 따르면 무단결근 등 직장 이탈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를 허가받은 직원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 1]과 같이 전남학숙에 근무하는 ○○○ 등 총 5명이 7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를 신청하여 허가받고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직원에게 연가휴가 수당 100만원이 과다 지급되어 예산이 낭비되었다.

3. 소속 임직원 음주운전 여부 미확인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진흥원 인사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승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재산상 손실, 성폭력 및 성매매, 음주운전, 채용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50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음주 또는 성 관련 사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보수 규정」(이하 “진흥원 보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제2항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은 그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재산상 손실, 성폭력 및 성매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진흥원 보수 규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중징계 및 주요 3대 비위(금품비위, 성관련 비위,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음주운전 비위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승진·승급 제한 및 성과연봉·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들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도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통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감사관이 감사기간(2023. 2. 6.~2. 10.) 동안 진흥원 소속 임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직원 ○○○가 2013. ○○.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징계를 처리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징계 규정 운영이 유명무실화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 ①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장(0급) ○○○, ○장(0급) ○○○, ○장(0급) ○○○, ○○(0급) ○○○, ○○(0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공가를 부당하게 사용한 5명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1,000,640원을 회수하고(시정)

③ 앞으로 임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기타보상금 집행 및 상품권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학숙)

훈 계 대 상 자 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학숙) ○○(0급) ○○○

②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학숙) ○○○○직 ○○○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 1]과 같이 전남학숙 기타보상금 예산과목으로 173,990천원을 편성하고 1119,190천원을 집행하였다.

[표 1] 전남학숙 기타보상금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주요 집행내역
계	173,900,000	119,190,030	
2020	52,500,000	26,035,050	근로도우미 활동보상금 20,394,950원, 상품권 구입 4,451,200원 등
2021	56,000,000	41,839,550	근로도우미 활동보상금 32,311,960원, 상품권 구입 1,830,490원 등
2022	65,400,000	51,315,430	근로도우미 활동보상금 32,691,880원, 자율회임원 활동보상금 9,150,000원, 상품권 구입 1,338,100 등

자료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0급) ○○○은 2019. 1. 1.부터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전남학숙 ○○○○팀에서 입사생 및 재사생 생활지도 및 복지후생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직 ○○○은 2019. 4. 1.부터 2023. 2. 10. 감사

일 현재까지 전남학숙 ○○○○팀에서 입사생 및 재사생 생활지도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기타보상금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5. 지출 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 해소 편에 따르면 보상금¹⁾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보상금은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재해복구 민간인 식비·장비유류대, 사고 시 치료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남학숙 운영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학숙 입사생의 권리와 의무, 학숙 생활의 질서 유지, 면학분위기 조성 등 학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생수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남학숙 학생수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학숙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숙 내 봉사활동, 헌혈, 선행, 학숙행사 참여, 기타 학숙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학숙의 명예를 드높인 행위, 원장이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행위가 뛰어난 경우 표창 및 시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수칙 제25조 제2항에 학생자유회는 학생수칙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소란, 흡연, 음주 등) 및 공용구간 청결, 학숙행사 참여, 학생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제4항에 따르면 학생자유회는 자유회임원의 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²⁾에 따라 학숙이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

1) (301-01)민간인국외여비, (30-02)외빈초청여비, (301-03)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1-04)행사실비보상금, (301-05)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301-06)기타보상금이 해당됨

2) 학생자유회장은 A등급, 학생자유회부회장은 B등급, 층장은 B또는 C등급(공용시설 점검결과, 가·별점 합계 등 직전 학기 학숙 활동실적과 자유회장 및 지도사의 층장 평가를 합산)

어 있다.

또한 같은 수칙 제26조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과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숙에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고, 근로에 대한 보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도우미는 도서대출, 입·퇴사 안내 등 학생 편의를 위한 업무를 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전남학숙의 근로도우미 활동보상금 등 전남학숙의 기타보상금을 편성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전남학숙)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타보상금을 편성하여 근로도우미 활동보상비를 지급하면서 [별표 1]과 같이 도서대출, 입·퇴사 안내 등 학생 편의를 위한 업무 등 근로분야를 정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심사하여 85,398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2022년 자유회임원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별표 1]과 같이 2022년 상반기에는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1등부터 9등까지 4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였고, 2022년 하반기에는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50점 이하는 20만원을 지급하고 는 등 평가기준과 지급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적용·평가하여 9,150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학숙 재사생에게 시상품을 지급하면서 「전남학숙 학생수칙」 제20조에 따라 학숙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숙 내 봉사활동, 헌혈, 선행 등을 하는 재사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1]과 같이 관련 수칙과 무관한 행사를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면서 코로나19격려 또는 ○○생활 인증샷 이벤트 행사 상품권 구입 3,840천원, ○○○경기응원 시상품 구입 950천원, 프로○○ 관람 입장료와 간식비로 735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5,525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전남학숙 기타보상금 100,073천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상품권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권익위원회의 「상품권 관리 지침」 제3조에 따르면 관리부서는 상품권 구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집행부서의 구매수량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등 시기적으로 집계하여 통합구매 할 수 있고, 제6조에 따르면 상품권을 구입 및 사용할 경우에는 별첨 상품권 구입 및 사용대장 양식에 따라 용도, 수량, 지급일자, 사용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권 수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목적, 수량,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5. 지출 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 편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은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재해복구 민간인 식비·장비유류대, 사고 시 치료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반기별, 연간 등 시기적으로 집계하여 통합구매를 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여야 하고, 구입 및 사용 시에는 상품권 구입 및 사용대장을 마련하여 용도, 수량, 지급일자, 사용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며 실제 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여 상품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전남학숙)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별표 2] “상품권 등 구입 및 사용 명세”와 같이 총 16회 7,619천원의 상품권을

구입 및 사용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상품권을 구입 및 사용 시에는 상품권 구입 및 사용대장을 마련하여 용도, 수량, 지급일자, 사용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며 실제 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여 상품권을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상품권 구입 및 사용대장을 마련하지 않아 용도, 수량, 지급일자,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상품권의 실제 수령인의 자필 서명 등을 하지 않은 채 상품권 수령 여부 등을 알 수 없게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거나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등으로 민간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21. 11. 3.에 직원 2명(○○○, ○○○)에게 1만원권 상품권을 각 1매씩, 2021. 12. 27.에 직원 1명(○○○)에게 1만원권 상품권 1매 등 총 3만원의 상품권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 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도우미 활동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장(0급) ○○○, ○○○○직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상품권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용도, 수량, 지급일자, 사용처, 상품권의 실제 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하는 등 상품권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주의)
- ③ 상품권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등 시기별로 통합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생 략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민간인이 참여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3. 지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행사운영비, 행사관련시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가 해당되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5. 지출 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가 해당되고,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가 해당되며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¹⁾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1) 2021년까지는 행사실비보상금 집행기준에 급량비(매식비 기준단가 8,000원)만 표기, 2022년부터 급량비 단가 8,000원에 식비와 간식비 포함

따라서 진흥원은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 구입비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행사실비보상금로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를 집행할 때에는 급량비 기준단가 이내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라남도 새○○ 으뜸○○ 한마당 행사’ 등 27건의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 구입비를 집행할 수 없는데도 [표 1] 및 [별표] “행사운영비 부적정 집행 현황”과 같이 식비·다과 구입 26건, 1,524천원을 집행하였고, 행사관련 기념품 구입 1건, 1,050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27건, 2,574천원의 행사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1] 행사운영비 부적정 집행 현황(2020. 7월~2022. 12월)

(단위 : 원)

구분	연도	행사명	부적정 집행액
	총계	27건	2,574,360
식비·다과구입	소계	26건	1,524,360
	2020년	새○○ 으뜸○○ 한마당 행사 등 2건	329,000
	2021년	2021년 ○○○○○단 발대식 및 교육 등 15건	798,680
	2022년	○○○○도시○ 지정 컨설팅 등 9건	396,680
기념품 구입	소계	1건	1,050,000
	2022년	제3회 전라남도 ○○○○박람회 행사	1,050,000

자료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를 집행할 시에는 매식비 기준단가 8천원 이내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 2]와 같이 ‘제7회 대한민국 ○○○○박람회’ 등 6건의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매식비 기준단가 8천원보다 적게는 31원, 많게는 6,464원을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2] 행사실비보상금 매식비 단가 초과 집행 현황(2021. 11월~2022. 12월)

(단위 : 원)

집행일	행사명	참석 인원	급량비 집행액	1인당 급량비 단가	급량비단가 초과액
	6건				
2021.00.00.	제7회 대한민국 ○○○○박람회	97	779,000	8,031	31
2022.00.00.	○○캠프 ○○ 일일캠프	90	1,301,700	14,464	6,464
2022.00.00.	제1회 ○○○데이 추진	35	455,100	13,003	5,003
2022.00.00.	2022년 시군 ○○○○ ○○○ 회의	30	262,000	8,733	733
2022.00.00.	2022년 ○○○ 중심 ○○학습 성과공유회	90	996,000	11,067	3,067
2022.00.00.	2022년 함께하는 ○○○○○○○○○○○○○○○○○3차	27	374,740	13,880	5,880

자료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 7월부터 2022. 12월까지 90건¹⁾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²⁾과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총 90건, 18억 6,925만원

2) (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소기업과 체결할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1]과 같이 ‘2022년 ○○○ ○○○ ○박람회 총괄대행 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1인 견적 부적정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

계약명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낙찰률
3건		120,000	108,000		
2022년 ○○○ ○○○○박람회 총괄대행 용역	2022.00.00.	50,000	45,000	(주)○○○○○	90
2022년 제3회 ○○○○ ○○세미나 개최 대행 용역	2022.00.00.	34,000	30,600	(주)○○	"
전남 ○○ ○○학교 교재 제작	2022.00.00.	36,000	32,400	○○○	"

자료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3. 단일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 따르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기준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물품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용역·물품은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용역계약 체결 시 사업의 예산편성과 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사업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22년 ○○○○ 멘토링 ○○ 사업이 단일 예산으로 편성되어 전체 사업내용이 단일사업으로 확정되었는데도 ‘2022년 ○○○○ 멘토링 ○○’를 [표 2]와 같이 2022. 00. 00. 행사대행과 강사파견으로 부적정하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분할발주 현황

(단위 : 천원, %)

예산편성 사업명	분할 발주 및 계약체결 현황						
	용역명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율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2022년 ○○○○ 멘토링 ○○	계		51,990	50,790			
	행사대행	2022.00.00.	39,990	39,990	100	전라남도○○○○○○○	1인 수의계약
	강사 파견	2022.00.00.	12,000	10,800	90	○○○○○개발원	

자료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낙찰하한율(88%)보다 높은 낙찰률로 계약하여 최대 503만원³⁾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503만원 = 5,079만원(계약금액)-[5,199(예정가격)×88%(견적공고 시 용역 낙찰하한율)]

4.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과다체결 등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6.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속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과다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속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과다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 가격을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 3]과 같이 6건 이상 중복하여 계약하는 등 5개 업체에 총 34건을 편중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특정업체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업체	계약건수	계약금액	비고
계	5건	34	722,306	
1	○○○생각	6	64,407	
2	○○○숲	6	141,520	여성기업
3	유한회사 ○○피	6	98,405	여성기업
4	○○씨	9	111,427	여성기업
5	○○○○개발원	7	306,547	여성기업

자료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

래실레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별표] “낙찰률 100%로 체결한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2020년 전라남도 ○○○○○○조사 용역’ 등 24건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금액 그대로 낙찰률 100%를 적용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었고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36,889천원⁴⁾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소기업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단일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단일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36,889천원 = 307,412천원(계약금액)-[307,412(예정가격)×88%(견적공고 시 용역·물품 낙찰하한율)]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계약기간 연장 건에 대한 채권확보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4건, 113,700천원의 선금을 지급하였고, 총 15건, 계약금액 570,557천원 용역계약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유로 용역기간을 연장하였다.

2. 선금 채권 보증기간 연장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4. 채권 확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되,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 지급에 대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선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한 이행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 선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와 같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구축 용역’ 등 4건에 대하여 총 113,700천원의 선금을 지급한 이후 용역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이 연장된 선금보증서 등을 받지 않아 선금에 대한 채권 확보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선금 채권확보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업체명	계약금액	선금지급일	선금지급액	용역기간 연장	
					당초	변경
계	4건			113,700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구축 용역	(주)○○○○○ 시스템	118,500	2020.9.28.	59,250	2020.09.02. ~ 2020.12.31.	2020.09.02. ~ 2020.1.15.
2021년 ○○를 ○○하는 ○○마당	○○○○○ 개발원	47,500	2021.5.25.	23,750	2021.03.17 ~ 2021.07.31.	2021.03.17 ~ 2021.12.31.
○○○ ○○ 개발 연구용역	○○대학교	20,000	2022.4.15.	10,000	2022.02.23. ~ 2022.10.31.	2022.02.23. ~ 2022.12.30.
○○○ ○○계획 수립 용역	○○○○○	41,400	2022.6.10.	20,700	2022.05.28. ~ 2022.10.21.	2022.05.28. ~ 2022.11.21.

자료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3. 계약이행보증서 갱신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사무처)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020년 ○○○○ ○○○○ ○○조사 용역’ 등 15건, 570,557천원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별표]와 같이 계약상대

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변경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 ① 계약기간 연장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고(시정)
- ②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시 선금 및 계약이행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 완료확인서 발급 업무 소홀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학숙)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전남학숙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따로 최종 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전남학숙)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와 같이 도립전남학숙 ○○○ 리모델링(도배, 장판)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최종 검사를 실시한 이후 적게는 25일부터 많게는 86일이 지나서야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전남학숙 ○○○○○환경개선공사(타일, 창호) 등 2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일 전인 2022. 10. 5.에 최종 검사를 실시하고도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있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업무 부적정 처리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최종 검사일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여부	발급 지연일
계	5건					
1	도립전남학숙 ○○○ 리모델링(도배, 장판) 공사	2020.07.15.~ 2020.08.13. (주○○○○엑스)	2020.08.13. ~ 2021.08.12.	2021.11.05.	여	86일
2	전남학숙 ○○○○○ ○○○○○ 설치공사	2019.07.01.~ 2019.09.06. (주○○○건설)	2019.09.06. ~ 2022.09.05.	2022.11.29.	여	85일
3	전남학숙 ○○○○○ 설치공사(○○층)	2018.08.08.~ 2018.10.12. (주○○○전기)	2018.10.12. ~ 2021.10.11.	2021.11.05.	여	25일
4	전남학숙 ○○○○○ 환경개선공사(타일, 창호)	2021.09.06.~ 2021.10.05. (주○○○종합건설)	2021.10.15. ~ 2022.10.14.	2022.10.05.	부	
5	전남학숙 ○○○○○ 환경개선공사(기타부분)	2021.09.06.~ 2021.10.05. (주○○○종합건설)	2021.10.15. ~ 2022.10.14.	2022.10.05.	부	

자료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최종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